

「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201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검토내용

① 세입결산(총괄)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예 산 현 액	징 수 결정액	수납액	미 수 납 액		
					계	결손처분	이월액
합 계	320,719,449	357,281,994	373,282,811	364,115,655	9,167,156	1,834,718	7,332,437
일반회계	270,293,182	291,398,937	306,594,820	298,556,691	8,038,129	1,819,157	6,218,972
특별회계	50,426,267	65,883,057	66,687,991	65,558,964	1,129,026	15,561	1,113,465

가. 일반회계 세입부분

- 일반회계 수납액은 298,556,691천원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02%이고, 징수결정액은 306,594,820천원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05%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%임
 - 지방세 수납액은 23,157,549천원으로 재산세,주민세,자동차세,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 등의 순으로 수납되었으며,
 - 세외수입 수납액은 43,327,940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, 예수금수입, 사업수입,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순으로 징수되었음
 - 지방교부세는 156,465,580천원이고, 재정보조금은 6,609,528천원이며
 - 보조금은 68,996,09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3,991,148천원, 도비 보조금은 15,004,946천원을 수납하였음.

-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지난해보다 370,064천원이 증가한 8,038,129천원으로,
 - 지방세 미수납액은 재산세 430,669천원 / 자동차세 487,009천원 / 지방소득세 1,845,022천원 / 지난년도 수입 1,639,875천원이고,
 -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재산임대수입 14,658천원 / 사용료수입 212,931천원 / 수수료수입 2,785천원 / 과태료 247,330천원 / 지난년도 수입 2,687,395천원임.

나. 특별회계 세입부분

-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 실제수납액은 65,558,964천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의 99.5%이고, 징수결정액은 66,687,99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1.2%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8.3%임.

-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지난해보다 78,406천원이 감소한 1,129,026천원으로,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31,688천원, 주택사업 525,990천원/기반시설 부담금 7,132천원 /의료보호 기금 68,448천원 /수질개선 29,804천원/공유재산관리 65,964천원이 발생하였음.

주요 원인을 살펴보면

-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및 지난 년도 수입이며
- 주택사업특별회계는 '72년부터 '86년 까지 1년거치 19년상환의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지연으로 발생한 사항이고,
-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지난 년도 수입이며,
-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, 지난년도 수입이고,
-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며,
-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공유재산임대료, 공유재산매각수입금, 변상금 및 위약금 및 지난년도 수입 지연인 것으로 나타났음.

② 세출결산(총괄)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예산현액	지출원인 행 위 액	지 출 액	익년도 이월액	집행잔액
합 계	320,719,449	357,281,994	317,707,976	300,674,994	41,448,218	15,158,783
일반회계	270,293,182	291,398,937	263,401,002	255,274,210	24,252,707	11,872,020
특별회계	50,426,267	65,883,057	54,306,974	45,400,783	17,195,511	3,286,763

※ 예산현액은 2012년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것임

가. 일반회계 세출부분

-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91,398,937천원에 대하여 255,274,210천원을 집행하였으며, 24,252,707천원을 이월하였고, 집행잔액은 11,872,020천원이 발생하였음.
- 지출액 215,257,163천원은,
 - 일반공공행정 17,825,468천원, 공공질서 및 안전 15,208,422천원, 교육 2,201,669천원, 문화관광 18,923,384천원, 환경보호 29,431,032천원, 사회복지 31,950,044천원, 보건 3,292,021천원, 농림해양수산 51,420,747천원, 산업중소기업 4,053,727천원, 수송및교통 18,054,488천원, 국토및지역개발 27,159,750천원, 기타 35,753,458천원임.
- 이월액 24,252,707천원중,
 - 명시이월 90건 18,514,536천원, 사고이월 15건 1,216,869천원, 계속비이월 12건 4,521,301천원임.

- 명시이월 90건 18,514,536천원은 군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, 월정사 전시관 건립, 험프지역특화사업, 산소길 조성,천제당 체육공원 조성 등 대부분 연차사업이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및 추경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이 원인임.
 - 사고이월 15건 1,216,869천원은 진부장레식장 건립,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,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등 대부분 동절기 공기 부족, 절대 공기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
 - 계속비이월은 12건 4,521,301천원은 마하생태 관광모델 정비사업,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, 한강역사및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 등임
- 2012년도 예비비는 총 5건 375,91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, 374,48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용도를 보면
- 제15호 태풍 “블라벤” 및 제16호 태풍 “산바”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 및 시설지원금 등임

나. 특별회계 세출부분

-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65,883,057천원에 대하여 45,400,783천원을 집행하고, 17,195,510천원을 이월하였으며, 3,286,76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.
-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
 -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6,070,769천원/ 주택사업특별회계 57,702천원 /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52,333천원 /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,053천원 / 수질개선특별회계 15,574,374천원 공유재산특별회계 2,744,368천원을 집행하였음.

③ 기금·채권·채무·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

가. 기금현황 및 현재액

(단위:천원)

구 분	전년도말	2012년도		2012년 현재액	전년대비 증 감
		조성액	지출액		
합 계	12,393,516	2,134,663	646,507	13,881,671	1,488,156
식품진흥기금	113,283	49,340	53,859	108,764,524	△4,519
사회복지기금	4,080,466	253,993	96,370	4,238,089	157,623
재난관리기금	1,044,619	329,425	351,761	1,022,284	△22,335
체육진흥기금	1,546,640	537,208		2,083,848	537,208
통합관리기금	5,608,507	964,697	144,518	6,428,687	820,179

○ 현재 우리군은 총 5종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종류는 식품진흥, 사회복지, 재난관리, 체육진흥기금, 통합관리기금이 있음.

- 기금 현재액은 2011년도 12,393,516천원 보다 1,488,156천원이 증액된 13,881,671천원으로
- 기금 수입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나타났으며
- 기금 지출은 재난응급복구,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금과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지출되었음.

나. 채권증감 및 현재액

(단위:천원)

구 분	전년도말	2012년도		2012년 현재액	전년대비 증 감
		증	감		
합 계	6,094,002	465,606	236,709	6,322,899	228,897
일반회계	4,663,847	364,666	117,882	4,910,632	246,785
특별회계	541,786	-	23,998	517,788	△23,998
기 금	888,369	100,940	94,829	894,480	6,111

- 보유채권 현재액은 2011년말 현재 6,094,002천원에서 2011년도
 용자금채권과 보증금주택 채권 465,606천원이 발생되고, 이행기간 도래로
 인해 236,709천원이 소멸되어 2012년말 현재액은 6,322,899천원임.

다. 채무증감 및 현재액

(단위:천원)

구 분	전년도말	2012년도		조정액	2012년 현재액	전년대비 증 감
		증	감			
합 계	22,882,391	-	3,202,392	-	19,680,000	△3,082,392
일반회계	22,762,391	-	3,082,392	-	19,680,000	△3,082,392
특별회계	120,000	-	120,000	-	-	-

- 평창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말 22,882,391천원에서
 - 2012년말 19,680,000천원으로 전년대비 △3,082,392천원이 감소
 하였음.

라.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

(단위:천원)

구 분	전년도말	2012년도		2012년 현재액	전년대비 증 감
		증	감		
합 계	2,152,878,430	138,613,974	111,718,098	2,179,839,839	26,961,409
행정재산	2,101,747,501	135,430,715	109,778,318	2,127,635,161	25,887,660
일반재산	51,131,929	3,182,259	1,939,780	52,204,678	1,072,749

-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2011년말 현재액인 2,152,878,430천원에서 26,961,409천원이 증가한 2,179,839,839천원으로
 - 토지 127,575천㎡ / 400,763,036천원
 - 건물 216,212㎡ / 274,834,616천원
 - 기타 1,384,246건 / 1,504,242,190천원 임.

마. 물품현재액

- 물품현황은 2011년말 현재액 2,940,695천원보다 131,717천원이 증액된 5,518,575천원으로 증감사유별 내역을 보면
 - 신규취득은 / 3,039,806천원이 증가하였고,
 - 매각, 관리전환·양여 등은 461,926천원이 감소하였음.

[검토의견]

- 2012년 한해 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·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320,719,440천원 이고, 예산현액은 357,281,995천원이며,
 - 세입결산액은 364,115,655천원, 세출결산액은 300,674,994천원 으로 예산현액대비 84%를 지출하여 15,158,78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.
- 2012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으로 270,293,18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98,556,691천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, 세출에서는 255,274,210천원이

지출되어 43,282,48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,
다음연도 이월액 24,252,707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
1,275,47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7,754,296천원임.

-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
예산액은 50,426,267천원, 예산현액은 65,883,057천원, 세입결산액은
65,558,964천원이며, 세출결산액은 45,400,783천원으로
20,158,18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,
 - 다음연도 이월액 17,195,510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
21,674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,940,996천원임.

-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
 - 일반회계 수납율은 전년과 동일한 97%로 298,556,691천원이며
결손처분액 1,819,157천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6,218,972천원임.
 -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태만,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,무재산
행방불명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45%,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
30%를 차지하고 있어,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
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.
 - 또한, 전체적으로 정확한 세수추계,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
대한 징수노력,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
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

○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

- 집행액은 255,274,210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91,398,937천원의 87.6%가 지출되었으며, 불용액은 4%인 11,872,019천원임
-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 비해 0.5% 이월액은 0.3%감소 하였고, 불용비율은 0.8%증가하였음.
- 이월액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나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,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원인을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

- 모두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5,558,964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.3%로 1,129,026천원이 미수납 되었음.
-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함.

○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

- 집행액은 45,400,78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5,883,057천원의 69%가 지출되었으며, 불용액은 5%인 3,286,763천원임.

○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

-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년대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반면

※ 2011년 : 365억원, 2012년 : 414억원 ⇒ 49억원 증가

- 세입에있어 과오납반환액(443,699천원)과 결손처분(1,834,718천원)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이 감소한 것은 징수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

- 일반회계 62억원, 특별회계 11억원 등 총73억원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예산현액(2,914억원)이 실제수납액(2,986억원)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

- 지방세 수입은 222억 예산현액 대비 232억을 수납하여 10억의 차액이,
- 세외수입은 417억 현액대비 433억원을 수납하여 16억원,
- 지방교부세는 1,520억 현액대비 1,565억을 수납하여 45억원,
- 재정보전금은 612억 현액대비 661억을 수납하여 49억원 등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.

- 또한, 예산전용을 보면 25건, 413,010천원으로 전년도 (43건, 480,670천원)에도 지적한바 있으나 계속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, 계획에도 없는 신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은 아닌지 등 발생하게 된 배경, 사유, 변동내용을 검토하여 전용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- 금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
 - 예산을 집행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, 효과가 없거나 부실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사업의 축소·폐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
 - 모든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축소·폐지시 남은 예산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
 - 또한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발생배경과 사업계획의 취소,규모축소, 예산절감, 예산미배정 등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
 -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된 경우 반환액과 그 사유는 적정한지 여부와
 - 각종 보조금, 융자금, 보상금, 출연금 등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이 불요불급한 경비의 연례적이고 단순한 친목·사교단체의 등에 대한 지원은 아닌지, 형식적인 보조는 아닌 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또한,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국·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조치 미흡 등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▶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

번호	제 목	비고
1	국·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조치 미흡	
2	기금사업 운용 미진	
3	2012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사업추진 부적정	
4	2011년 보조금(국,도비) 집행잔액 미반환	
5	2012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	
6	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	
7	회계별 세입금 관리 부적정	
8	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	
9	세외수입 관리 소홀	
10	세입예산 편성 부적정	
11	예산 불용처리에 대한 조치 미흡	
12	보조금 착금 확인 및 정리 철저	